



■ 신임 연구소장 인사말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연구소의 제2의 도약을 추진하며



치안정책연구소장 이종우

주 지하다시피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 1980년 8월 경찰의 치안역량 극대화 와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학문적·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치안수요의 예측과 대응방안 제시를 통해 21세기 경찰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어느덧 30여 성상(星霜)이 흐르는 과정에서 치안관련연구의 과학화와 합리적·효율적인 중장기 경찰발전 모델을 제시하며, 치안정책연구소는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7월 통합연구소로 발족한 이후, 연구소 체제 정비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適實性)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구소가 치안정책 개발의 산실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치안관련 연구기관으로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른살을 맞은 '청년 치안정책연구소'는 처음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치안정책연구의 선구자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이 소장으로서 부임하며 다음과 같이 연구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구현해 나가는데 동참하고자 합니다.

첫째, 활력있고 건강한 경찰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직운영 전략 및 중장기 인사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치안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강한 경찰조직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둘째, 경찰청의 '경찰비전 2015'를 근간으로 양질(良質)의 실용적인 정책연구 결과물을 생산해 냄으로써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경찰발전 추진과정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밀착형 연구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일선 현업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치안관련 연구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치안정책연구의 허브(Hub)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倍前)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내외 치안관련 연구기관과의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나무의 마디가 바로 그 큰 키를 유지하는 힘의 원천이듯이, 연구소 설립 30년을 맞이하는 올해 연구소가 제2의 도약을 위한 매듭을 짓고 경찰발전의 주춧돌을 다지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에 충실한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두박두박 나가고자 합니다.

나아가 그간의 작은 성과에 만족하여 긴장을 풀지 않고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다시 팽팽하게 바꾸어 맨다'는 뜻의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각오로 경찰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가족 여러분들께도 우리 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따끔한 충고와 따뜻한 격려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경인년(庚寅年) 새해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PSI](#)

■ **응역(자유)연구과제**

경찰관 체력 검정제 도입 및 경찰관 개인별 맞춤형 기초체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김 형 돈 교수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에게 체력 검사를 실시하여 연령대별 및 남녀별 체력 기준치를 제시하며, 경찰 체력 검정에 필요한 종목을 선정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체력 검사 종목에 한정하지 않고 경찰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체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직무 체력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다양한 운동·트레이닝의 이론을 바탕으로 관서별로 자체 체력단련 시간에 실시하여 일선 경찰관들의 기초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체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과학적인 체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찾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각종 연구자료 및 정책 보고서 등 관련 문헌을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조사 설계 및 방법을 설정한 후 서울, 경기지역의 20세 이상의 경찰관과 시민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경찰공무원의 체격 및 체력을 평가하고, 그 기초자료를 통해 체력 특성에 따른 기준치 및 경찰관 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미국 등의 직무 관련 체력 검사 도구를 근거로 다양한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경찰들에게 체력검사로 활용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측정 항목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기존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서 기존 실태조사와 측정 항목을 유사하게 선정하였다.

경찰체력 평가 결과

이번 연구에서 경찰공무원 1,097명을 대상으로 경찰 체력 실태조사를 위한 체력 측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 결과를 2002년 경찰 체력 검사 결과와 비교하면, 남자 24세 이하와 여자 29세 이하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2009년 측정된 경찰이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체력면에서 남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유연성, 민첩성, 오래달리기,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순발력, 복근 근지구력, 오래 달리기에서 2009년 경찰이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체력 검정을 위한 검사 종목을 선정하였다. 검사 종목은 2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는데 제 1 유형은 경찰 종합 체력 검사로서 기본적으로 측정해야 되는 최소한의 체력 요소로서 12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 멀리 뛰기, 악력이 채택되었으며, 제 2 유형은 제 1 유형에서 측정하는 1200m 달리기 대신에 상지 전체의 근력·근지구력 측정을 할 수 있는 팔굽혀 펴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선택된 체력 검정 종목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 및 다른 특수 직종의 종사자와 비교하여 경찰 체력 검정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연령대별 체력평가 기준표를 작성하였다.

경찰 직무체력검사 개발 결과

본 경찰 직무 체력 검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일본과 미국 경찰 체력 검사에 대한 simulation을 수 차례 실시하였으며,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적 현실을 감안하여 개발하였다.

경찰 직무 체력 검사는 형식적인 면을 최대한 지양하며, 검자와 피검자에 대해서는 장소 용구 시간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검사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 제1단계(피의자 추적)

- 최초 출발 지점에 서서 “시작” 구호와 동시에 출발하여 15m를 뛰어 라바콘을 돌아 다시 출발 지점으로 온다.
- 라바콘을 밖으로 돌아 허들을 2개 넘고 라바콘 밖으로 돌아 90도 방향으로 달리며 허들 2개를 아래로 통과한다.
- 라바콘을 밖으로 돌은 후 지그재그로 라바콘을 통과한다.

② 제2단계(장애물 돌파)

- 평균대 위로 이동한 후 뿔들을 뛰어 넘은 후 매트 위에서 앞구르기를 2회 실시한다.
- 라바콘을 밖으로 돌은 후 승강대 오르기과 내리기를 10회 반복한다.
- 10회 반복 후 15m 거리에 있는 윗몸일으키기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한다.

③ 제3단계(피의자 제압 및 호송)

- 벽에 마크되어 있는 선을 터치한 후 앞으로 엎드린다. 다시 일어서서 선을 터치 한 후 뒤로 눕는다. 이 동작을 5회 반복한다.
- 5회 반복한 후 torso bag(40-50kg)을 종료 지점까지 끌어 이동시킨다.

경찰체력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결과

경찰체력증진 교육프로그램은 일선 경찰관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건강 관련 체력요인(근력, 유연성, 국소근지구력, 전신지구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운동·트레이닝의 이론과 실체를 제시한다. 경찰 체력 증진 교육프로그램은 총 4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운동처방을 위한 개인별 유산소운동 프로그램의 설계안, 둘째, 운동처방을 통한 개인별 근력운동 프로그램의 설계안

(저항성 근력 트레이닝, 체중의 부하를 이용한 트레이닝(상체를 위한 근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 몸통을 위한 근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 하체를 위한 근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 셋째, 체력 수준에 따른 운동 프로그램(근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 근지구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 유연성 강화 운동 프로그램, 민첩성 및 순발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 넷째, 경찰 직무관련 체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단체훈련을 위한 순환 운동 프로그램, 개인 훈련을 위한 부분 조직 강화 운동 프로그램, 단체훈련을 위한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어 경찰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훈련을 하거나 단체로서 운동 할 때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언

경찰 체력 검정의 고유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찰관 체력 검정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 활용 방법의 다양화, 체력 강화를 위한 기반 시설의 개선, 체력 훈련 경찰 지도자의 양성, 경찰 체육 전담 기관의 설치와 근무 여건의 개선과 같은 기초적인 선행 조건이 이루어져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PSI](#)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www.psi.go.kr).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팀장 : 이상수 연구관
 편집위원 : 김동혁, 선승석, 여태수, 이형범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031-285-2616 (경비) 61-2376
- e-mail: webmaster@psi.go.kr

■ 책임연구과제 논문요약

경찰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경찰 관서운영 형태

여태수 경찰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문제의 제기

‘범죄의 예방’은 다양한 경찰활동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다. 우리 경찰은 생활안전 기능에서 주로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최 일선 경찰기관인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대나 파출소는 범죄예방이라는 지역경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조직형태이다. 따라서 각 시대의 고유한 상황에 따라 그 모습이나 운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현행 지구대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출소 부활’을 추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범죄예방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바람직한 지역경찰 관서 형태는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지역경찰관서의 역할

현대사회에서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 지구대 시스템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과거 파출소 제도가 더 바람직한지를 검토하기에 앞서 과연 지구대 파출소로 대표되는 ‘지역경찰관서’에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물론, 지역경찰관서 운영의 목표는 ‘범죄의 예방’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경찰관서는 어떤 활동을 담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해야만, 현대사회에서 지역경찰관서의 역할을 제대로 표현했다고 할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70년대 미국에서 실시된 경찰활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은 더 이상 ‘치안’이 경찰기관의 노력만으로 확보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범

죄예방전략들-Community Policing, Problem Oriented Policing등-의 핵심내용은 경찰과 지역사회의 ‘치안서비스의 협력생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현대사회에서 지역경찰관서의 역할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 더해, 지역사회와 함께 치안서비스를 생산해 내는 ‘지역사회의 조력자’, ‘상담자’ 또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과거의 범죄예방 활동이 경찰만의 순찰활동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어야만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이 궁극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지역경찰 관서운영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우리나라 지역경찰 시스템의 도입과정

우리나라의 지역경찰 관서형태는 일제시대의 조직형태가 독립경찰 발족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파출소’를 중심으로 한 제도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계기로 민생치안 확립과 경찰업무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고, 당시 총무처와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기존 파출소를 통합 운영하여 인력과 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대단위 파출소’제도를 시행하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1992년 기존 파출소 제도로 환원되었고, 1994년에는 ‘광역파출소’제도를 시범운영했으나 이 또한 시범실시에 그치고 전면 도입되지 못했다. 당시 이들 제도의 실패 원인은 전통적인 파출소 제도에 대한 주민선호가 강력했고, 실제 범죄예방이나 검거에 있어 새로운 제도의 효과가 뚜렷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현행 지구대 제도는 2003년 시행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구대 시스템이 도입된 2003년 당시 파출소 운영 현황은 2부제(또는 전일제) 근무가 3부제로 전환되었으나 경찰관 인력증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1시점 최소 근무인원 4명(소내 2명, 순찰 2명)을 확보하지 못한 파출소가 전체 파출소의 41.5%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집행사범의 급격한 증가 등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나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현행 지구대 제도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전면 도입되었다.

2. 현행 지역경찰 관서운영형태의 문제점

한편, 지구대 제도 도입의 직접적인 배경이 파출소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찰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은 그대로 지구대 제도의 한계로 귀결되었다. 구체적으로, 지구대 체제의 도입 이후 범죄 및 신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중심으로 경찰인력과 장비 운용의 효율성은 다소 제고되었으나, 관할지역의 확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신속한 신고출동이 어려워 졌다거나, 치안센터로 전환되어 근무자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파출소를 환원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행 지구대 제도에 비해 과거 파출소 제도가 현재의 치안상황에 보다 적합한 제도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지구대 제도의 전면 도입은 범죄와 무질서에 대한 대응능력 취약 등 파출소 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또한, 과거 파출소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에서도 지역주민의 경찰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파출소의 경우 근무인원 부족으로 도보순찰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파출소가 소위 ‘풀뿌리 치안활동’(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보다 적합하다고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범죄예방활동, 범죄나 무질서에 대한 대응능력, 지역사회경찰활동 적합성, 경찰 내부만족(직무환경) 적합성 등 네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지구대와 파출소 제도를 비교평가 한 결과 양 제도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두 제도 모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지역경찰관서 운영사례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 경찰서를 중심으로 지역 경찰활동을 포함한 모든 경찰활동이 이루어지고 별도의 하부조직은 없다. 일본은 경찰서-교번(주재소)의 2단계 조직구조를 운영 중이며, 독일은 경찰서-지구경찰서-파출소의 3단계 구조를 갖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범죄사건 대응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경찰서와 교번이 각각 분할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은 최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담당하는 부서를 경찰서 내에 신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지역경찰 활동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결어 - 바람직한 지역경찰 관서운영 형태

현대사회에 요구되는 지역경찰관서의 역할은 예방순찰활동과 범죄신고에 대한 대응 그리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관서형태에 상관없이 경찰활동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경찰인력 확보이다. 현재 우리의 치안인력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치안환경에 부합하는 경찰인력의 증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인력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파출소는 최소인원(3~4명가량)이 주간에만 근무하며 도보순찰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담당하고, 야간에는 지구대 근무자가 근무하며 신고출동에 대응하는 형태의 절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최근 경찰청에서 도입한 24시간 운영 치안센터는 이런 관점에서 절충안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다만, 지역경찰 관서운영 형태와 함께, 지역경찰관의 활동 내용도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아래 Edward. A. Thibault의 주장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경찰관이 순찰구역에서 주민들을 방문하고 매일 근무를 하던 시절에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존재했다. 경찰관들이 경찰차 안에 격리되었기 때문에, 오직 사건이 발생한 후에만 시민들의 신고에 대응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경찰활동과는 정 반대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PSI**

■ 책임연구과제 논문요약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송 경 호 선임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연구의 배경

탈북자의 국내 입국이 2만 명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성공적 정착문제는 국가와 국민, 사회전체가 새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절박하고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초래된 문제 이면서도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이자 한반도 통일을 이룩해 나가기 위한 중차대한 과제인 것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문제는 자립 의지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가운데 취업 및 심리적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범죄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 수립과 사후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들이 북한을 탈출하게 된 배경과 정부의 정착지원 실태,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 개선방안과 보안경찰의 효율적 신변보호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탈북의 동기 및 경로

북한의 사회적 이탈행위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김일성 사망, 자연재해, 경제적 어려움이 국제적인 고립과 사회 불안정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이완과 이탈이 가속화되었다.

탈북의 주요 동기는 1995년을 기점으로 볼 때 이전 시기에는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과 염증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한국사회를 동경하면서 새로운 삶을 찾아 귀순한 정치 이념적 성향이 주요 동기로 작용한 반면 이후 시기부터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생존권적 차원의 탈북으로 변모하였다.

최근에는 인권침해 및 범법행위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탈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탈북의 주요 경로는 1970년대 말까지는 휴전선 및 해상을 통한 입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80년 이후부터는 중국과 러시아,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북·중 국경지역의 두만강·압록강·백두산 유역을 활용하고 있으며, 탈북의 유형은 단순 탈북, 현지정착 탈북, 장기체류(한국입국을 희망) 유형의 탈북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실태와 문제점

북한과 중국이 탈북자의 통계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통계시점과 기관, 시민단체에 등에 따라 수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북자의 약 84%가 함경남·북도 출신이며 이 지역의 인구 497만 명(청진 85만 명, 함경북도 127만 명, 함경남도 285만 명)과 중국 조선족 동포 210만 명(동북3성이 180만 명)임을 감안하여 판단한다면 탈북자는 약 3만 명 내외로 보여 진다. 이러한 수치는 함경남·북도의 성인 인구 1%에 해당되며 1.5세대 당 1명 정도의 탈북자가 발생한 것으로 북한사회의 심각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2009년 12월 현재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8,009명이며 약 1만 5천여 명의 탈북자가 제3국에서 은신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초기입국단계, 시설보호단계, 정착지원 및 사후지원 단계로 나누어 정부가 주도하면서 민간이 보조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① 초기입국단계는 탈북자가 국내외지역에서 한국

에 보호신청 후 정부(탈북자가 재외공관에 보호신청→재외공관에서 통일부에 통보→통일부 및 국정원에서 임시보호조치 및 사실관계 조사 실시 후 보호결정)가 임시적으로 보호결정을 내리는 단계이다.

② 시설보호단계는 대성공사와 하나원을 거치는 기본적인 단계이다. 대성공사에서는 탈북자의 신분, 탈북동기, 위장탈북여부, 관련 정보 수집 및 확인 조사(1주~4주) 후 하나원으로 신병을 이관한다.

총체적 보호·관리업무는 통일부가 주도하면서 부처별(신변보호 : 경찰, 거주지 보호 : 지방자치단체, 취업보호 : 노동부) 업무범위를 분담하고 있다.

하나원에서는 3개월의 생활지도, 사회적응교육, 기초직업훈련, 사회편입 및 생활안정지원 등 한국사회적응교육 후 사회로 배출시키고 있다.

③ 정착지원 및 사후지원 단계에서는 정착금을 지급하고 주택 및 취업, 교육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보호담당관제(거주지, 취업보호, 신변보호)를 통한 지원과 정착도우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끊임없는 정착지원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1인 기준 정착지원금 1,900만원(초기 300만원, 분할 300만원, 주거지원 1,300만원)과 36~56m²평형을 전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최하위계층(전체 66.7%)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한국사회 부적응의 문제는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책임 있는 노력부족과 심리적인 불안감, 한국사회와 국민의 편견과 무관심, 일관되지 못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빚어 낸 결과물로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 방안

첫째, 초기교육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원의 조직체계와 시설을 현실에 맞게 확대 개편하고 사회적응교육의 질적 향상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정착지원 방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현실에 맞게 법규정 개정 및 제도적 보완 등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취업 및 주거 지원을 사회진출과 동시에 추진하여 이들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나가야 한다.

③ 교육지원에 있어 능력과 적성에 맞게 상급학교 진학을 추진하고, 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대상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와 효율적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2만 명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경찰의 새로운 관리 패러다임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의 개정 및 보완책을 마련하고 보안경찰 본연의 임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 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부처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종합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현재의 인력 및 업무 효과의 극대화를 이룩할 수 있음)해야 한다.

② 일반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기간(6개월)을 3개월로 최소화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700여명의 보안경찰이 1만 8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변보호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가 과중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업무의 범위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③ 보안경찰이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관리업무에 정통하고 이를 준수해 나가야 한다.

또한 신변보호 대상자의 활동상황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변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위해 요소들을 사전에 감지하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보안경찰이 이들에 대해 교육자로서, 안내자로서,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때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은 그 만큼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

PSI

■ 경찰 관련 법안 쟁점 진단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적법한 경찰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도입방안

이 상 수 선임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정책기획연구실

문제의 제기 및 도입 필요성

위법한 경찰작용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적법한 경찰작용으로 타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가한 경우 경찰작용으로 인한 손해 내지 손실이 문제가 된다. 이때 위법한 경찰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적법한 경찰작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의 문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상태로 입법적 해결이 요망되어왔다.

적법한 경찰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 결여로 말미암아 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보상받을 규정이 딱히 없어 무고한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벌어지거나, 경찰의 적극적인 공무집행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그간 경찰관 개인이 사적으로 피해보상을 하거나 소속 경찰관서 경찰관들이 공동부담 또는 다른 예산을 변칙 운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이나 전염병예방법, 도로법 등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시민이 피해를 본 경우에도 손실보상 조항을 갖추고 있으나 유독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원유철의원이 손실보상제도를 신설하는 경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08. 11.10)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2009년 12월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관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여야 의원들 모두 손실보상제도 신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 의식수준과 여론 역시 정당한 경찰활동에 따른 손실보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제 도입의 분위기는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원유철의원의 개정안대로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경찰상 책임이 없거나 책임 한도를 초과한 특별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지급 기준 및 요건, 보상의 종류 및 범위·내용 등 사안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보상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직법 개정안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경찰상 책임이 없는 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보상액 산정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 본 글의 목적이 있다.

요컨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사망·신체상해·물건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경찰상 비책임자(또는 한도를 초과한 경찰상 책임자)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방안을 제시토록 한다. 즉, 경찰상 비책임자의 사망시 지급할 유족보상금·장례비, 신체상해시 지급할 요양비·휴업 및 장해 보상비, 물건훼손시 지급할 수리비·휴업보상비 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토록 한다.

적법한 경찰활동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

1. 손실보상의 원칙

적법한 경찰활동에 따른 손실보상체계는 합리성·형평성·현실적응성을 갖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상 체계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손실보상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손실보상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절대적 보상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임의적이고 가변적인 보상기준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상금 재심 요청과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증가시키는 요인으

로 혼란만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실보상 여부의 판단기준, 보상내용과 종류, 손실보상청구권의 실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경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손실보상원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내 타 법률(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도와 비교하여 경찰상 비책임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보상판단기준, 보상종류, 보상금액 산정방식 등에 있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상자간 상대적 보상체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손실보상 대상자의 범위를 엄격히 하고, 희생도와 공헌도에 따른 보상의 원칙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이때, 대상자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넷째, 보상은 인적 피해든 물적 피해든 금전보상으로 행해진다. 이때 등가보상원칙이 적용되는지 보상심의위원회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등가보상원칙이란 보상이 원칙적으로 이전의 상태를 확보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 즉 경제적으로 동일한 가치의 보상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손실보상의 기준과 보상액 수준은 새로운 제도의 이행을 위한 과도기를 설정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현실성 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손실보상제 도입시 ‘정당한 보상’의 개념 정의

헌법 제23조 3항의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보는 완전보상설이 타당하고, 그 중에서도 부대적 손실까지도 보상되어야 완전한 보상이라 할 것이므로 손실전부보상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직법상 손실보상제도 신설시 ‘정당한 보상’ 역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경찰상 책임이 없는 자의 생명·신체·재산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 피해의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3. 손실보상의 내용

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은 공용침해에 기한 손실보상청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원칙

적으로 직접적인 손실에 대하여만 보상이 행해지고, 기대이익 등의 간접손실은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기대이익이 통상적인 임금 또는 이용 대가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재산적 손실에 포함하고, 간접적인 손실인 경우에도 그것이 불합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직법상 손실보상의 내용은 앞서 정의한 ‘정당한 보상’의 개념을 준용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경찰상 책임이 없는 자의 생명·신체·재산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 피해의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도록 한다.

이때 손실의 종류를 적극적 손실(사망시 유족보상비·장례비, 신체 상해시 장해보상비·요양비, 물건 훼손 및 멸실시 수리비 등)과 소극적 손실(상해에 기인한 요양으로 인해 발생한 일일이익, 입원기간 동안의 받지 못한 임금 등 휴업보상비), 정신적 손실(위자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경찰상 손실보상의 경우, 적극적 손실과 소극적 손실은 완전보상 차원에서 보상범위에 포함하되, 정신적 손해 부분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경찰조치와 직접적 관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4. 손실보상의 종류 및 범위

손실보상의 종류는 원유철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기초로 할 때, 재산상 손해 뿐만아니라 생명·신체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적 피해가 아닌 생명·신체 등의 인적 피해까지도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손실보상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토록 한다. 생명·신체 등의 피해 정도에 대한 보상기준은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손실보상의 종류와 내용은 사망시 지급할 유족보상금·장례비, 신체 상해시 지급할 요양비·휴업 및 장해 보상비, 물건 훼손시 지급할 수리비·휴업보상비 등으로 구분한다. 이는 적법한 경찰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물질적 보상과, 미래의 기대소득보상, 그리고 미래 기대비용 보상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그림 1> 경찰 손실보상의 종류와 범위



경찰 손실보상의 종류

손실보상의 범위와 내용

물질적 보상	기대소득 보상	기대비용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 사망 시 유족 보상금, 유족 장례 비용 신체 상해 시 장해 보상비, 휴업 보상비 물건 훼손 시 수리비, 휴업 보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기대소득에 대한 보상 장래 취업 가능 기간에 상응하는 보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실액에 대한 보상 월실수입액, 휴업 보상비

5.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 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손실 보상자의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이때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지급방법이나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보상 범위와 관련하여 독일 통일경찰법모범초안 제 46조 제1항을 참고하여 통상의 임금 또는 사용대가를 초과하는 일실이익(日實利益) 및 경찰조치와 직접 관계가 없는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실보상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제안

1. 사망자 손실보상 기준(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또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다가 사망(대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에게 다음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 ①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보상(遺族報償)
- ② 장례비는 국가배상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준용

한 남자평균 임금의 100일분으로 한다.

2. 신체 상해시 보상금 및 요양비·휴업비

경찰상 비책임자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보상할 것을 제안한다.

- ①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 ②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보상(休業報償)
- ③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障害報償)

3. 물건 훼손시 보상금 및 수리비·휴업보상비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물건의 상태를 심사하여 ① 물건이 멸실되거나 수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실 보상행위 발생 당시 그 물건의 교환가격으로, ② 물건이 훼손되었으나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비로 한다. 요컨대,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은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두어 중복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경찰 손실보상의 처리절차

경찰의 손실보상 신청절차와 처리과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PSI](#)

<그림 2> 경찰 손실보상 청구 및 진행절차 흐름도



■ 현장 경찰관의 목소리

경찰의 ‘폐기대상 압수물’ 의 개발도상국 무상원조 방안

경사 박 재 홍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진경찰서 외사계

문제의 제기

지난 1월 초순 부산 사하경찰서에서는 영도구 청학동에서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하여 의류를 제작하고 있던 현장을 단속하여 제조혐의자를 입건하고 의류 등 관련 증거품 약 1,000점을 압수하였다.

그러나 압수물 처분에 관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재활용 검토를 하지 않고 전량 폐기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부산일보 2010년1월11일자)되어 경찰의 폐기대상(상표법위반 등) 압수물에 대한 재활용 의지가 약하다는 오해를 사게 되었다.

현행 재활용 가능 압수물 처리 실태

1. 경찰의 압수물 처리실태

경찰이 의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대상 압수물을 폐기하지 않고 복지시설 등에 기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압수물에 부착된 상표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경찰에서는 ‘압수물 처분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 일선 수사경찰 등이 상표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사과정에서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가방, 신발 등을 압수하여도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자청(서) 또는 위탁보관을 하게 된다. 그 후 법원의 형 확정 판결에 따라 검사 지휘를 받아 폐기처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부산세관의 압수물 처리사례

부산세관의 경우 상표법위반 사범을 단속하여 압수한 압수물을 폐기처분할 경우 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 등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감안, 지난 2005년부터 의류 등 압수물을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증하는 등의 ‘압수물 재활용’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실례로 부산세관은 2009년 압수한 신발 1만 4,820켤레, 의류 1만 2,000벌을 ‘몽골’에 기증하였다. 이는 시민으로부터 단속만하는 공무원이 아닌 베품 줄도 아는 공무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경찰의 압수물 처리 개선방안 - ODA참여 방안

1. ODA 운영현황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 및 차관을 의미한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ODA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ODA의 적정 규모 및 효율증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ODA를 통한 자원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 현재 ODA(공적개발원조) 주요 지원국은 OECD국가(27개국)이며, 특히 OECD산하기구인 개발원조위원회(DAC) 22개 회원국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 해외원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우리정부의 ODA규모는 40억달러에 불과(전 세계 ODA 기여도는 0.7%)하여 OECD회원국 위상에 걸맞지 않으며 ODA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최근 10년간 전체 ODA에 대한 기여도는 미국(25.9%), 일본(15.8%), 독일(12.0%) 순이다.

2. 압수물 활용을 통한 경찰의 ODA 참여방안

우리정부에서도 ODA 참여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시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경찰청에서 ‘폐기대상압수물 수혜국 원조’라는 콘텐츠로 개발하여 추진한다면 그야말로 시의 적절한 정책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폐기처분될 소중한 ‘자원’을 가장 보람 있게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규제와 단속 중심의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ODA 참여시 고려할 사항

경찰의 ODA 참여를 위해서는, 압수물의 소유자나 보관자의 이해와 공감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수혜국 원조를 빙자하여 재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등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자원조달기관 선정과

시민홍보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관련기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상표범위반으로 단속 후 압수된 폐기대상 물품(의류, 신발, 가방 및 그 부속물 등)을 관련 기관(법원, 검찰, 세관 등)과 국내 실정법 및 사정에 맞도록 협의하여 소요예산(상표 제거 등을 위한 업체위탁 비용 등)을 확보하는 한편, 폐기대상 압수물 자원조달 기관을 통합하는 논의를 거쳐 ‘폐기대상 압수물품’을 아프리카, 아시아 등 수혜국에 무상원조하는 방안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맺는 글

이상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폐기대상 압수물 처리와 관련하여 느낀 점들을 정리해 보았다.

‘폐기대상압수물’을 재활용하여 개도국에 원조하는 방식으로 경찰이 ‘공적개발원조’에 참여하면 경찰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고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공적개발원조(ODA)’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단속만 하는 기관이라는 고압적이고 딱딱한 이미지를 해소함으로써 경찰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OECD회원국의 위상에 맞는 자원외교의 방편으로 활용하여 국격(國格)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PSI](#)

- ▶ 현장에서 느낀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현장제언’에 글을 보내주신 분들 중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 드립니다.
- ▶ 앞으로도 일선 경찰관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소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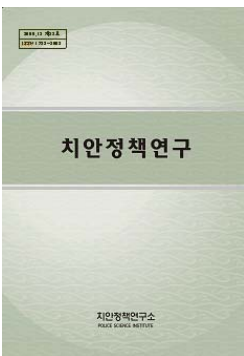
◆ 제3대 치안정책연구소장 이종우 경무관 취임

2010. 1. 6. 이종우 경무관이 제3대 치안정책연구소장으로 부임했다. 신임 연구소장 이종우 경무관은 1981년 간부후보 제29기로 경찰에 입문한 이래, 속초 경찰서장, 노량진 경찰서장, 경기청 제1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경찰대학 교수 부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이종우 소장은 경찰교육 및 연구기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소의 양적·질적 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연구소 기획운영과장 부임

2010. 1. 19. 양우석 총경이 치안정책연구소 운영과장으로 부임했다. 양우석 총경은 1983년 간부후보 제31기로 경찰에 입문한 이래 충남 예산·서산·금산 경찰서장, 대전중부 경찰서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치안정책연구 제23호 발간, 등재후보지 선정



치안정책연구소는 2009.12.1 학술지인 ‘치안정책연구’ 제23호를 발간했다. 금번 제23호에는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및 학계 교수들의 엄선된 경찰관련 논문 10편을 게재 했다.

한편, ‘치안정책연구’는 2009년 12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로 선정 되었다.

연구소에서 매년 1회 발행하는 ‘치안정책연구’는 1994년부터 발간된 국내 최고(最古)의 경찰학술지이며, 이번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선정됨으로써 연구자들이 연구실적을 국내외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금번 등재후보지 선정은 ‘치안정책연구’의 축적된 연구성과와 연구소의 행정적 노력이 더해져 이룬 쾌거이며, 이를 계기로 경찰대학교의 ‘경찰학연구’와 함께 앞으로 학계의 경찰관련 연구들을 선도하는 전문 학

술지로서 위상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0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과제 공모

치안정책연구소는 ‘실제 치안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의 발굴을 위해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하였다.

금년 연구과제 공모는 전국 경찰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과제응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모기간을 2009.12.28~2010.1.29까지 5주간으로 결정하였다.

연구소는 이번에 공모된 과제들을 대상으로 2월중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관 등정

◆ 연구부장(조용관) 주관 ‘2010 연구부 전체회의’ 개최

치안정책연구소는 2010. 1.18 조용관 연구부장 주관으로 전체 연구관이 참여한 가운데 연구부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2010년도 치안정책연구소 중점과제 및 연구방향 등이 주요안건이었는데,

- 치안정책연구 등재후보지 운영관리
- 치안정책리뷰 편집 및 발간 개선
- 경찰청의 비전 2015에 기초한 현장감 있는 연구과제 선정 등이 중점 논의되었다.

연구소는 향후 치안정책연구 및 치안정책리뷰 편집팀을 개편하고, 실별 연구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유동열 연구관(안보대책연구실) 통일교육교재 발간



유동열 선임연구관(안보대책 연구실)은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의뢰를 받아 통일교육교재인 ‘북한의 대남전략’을 집필하였다. 동 교재는 통일부에서 2010년 1월 1일자로 발간하였으며, 북한의 대남전략 개념, 운영원리, 체계, 대남전략 구사양상 및 전망 등 북한의 대남전략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이상수 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공공혁신과 자치경영 전문 월간지인 『공공정책21』 2010년 1월호 신년 기획특집 『6.2지방선거, 지방자치 선진화 촉진할까?』란에 ‘지방선거의 제약요인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 김용민 연구관(안보대책연구실)은 경찰대학교 윤성철 교수와 공동으로 경찰대학교 교재인 2010년 ‘경찰위기관리론’을 편찬하였다. 김용민 연구관은 세계 각국의 위기관리체계 및 법·제도 분야의 개정을 담당하였으며, 해당 교재는 경찰대학생 등의 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 임현규 연구관 승진 및 전보발령

치안정책연구소 정책기획연구실 임현규 연구관(경감)이 2010년도 정기승진시험(경정)에 합격하였다. 임현규 경감은 지난 2008년 치안정책연구소에 부임한 이래 경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 연구활동을 통해 치안정책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금번 승진으로 인해 연구소를 떠나 일선 치안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연구소 동료 연구관들은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였다.

◆ 2010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출범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2010년을 맞아 이상수 연구관을 팀장으로하는 치안정책리뷰 편집팀을 새롭게 출범하였다. 편집팀은 이상수 팀장(선임연구관, 정책기획연구실), 김동혁 책임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 선승석 경찰연구관(사회안정대책연구실), 여태수 경찰연구관(생활안전대책연구실), 이형범 경찰연구관(범죄수사연구실)등 5인이며 위원들은 앞으로 1년간 편집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PSI](http://psi.go.kr)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치안정책리뷰를 보신 후 편집실 앞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내용》

- 이름, 근무지, 연락처,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
- 치안정책리뷰에서 다루기 원하는 내용
- 기타 치안정책연구 발간에 관련된 의견

《보내실 곳》

- 인터넷: webmaster@psi.go.kr
- 내부망: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이형범

◆ 치안정책연구소 소개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경찰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PSI](#)

◆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 서	담 당 업 무
정책기획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 기획정책개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감사정보통신·홍보 분야 등에 관한 연구 • 총무행정·보수후생복지 등에 관한 연구
사회안정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보활동 및 국내 사회안정 대책 연구 • 경찰 경비활동 및 대테러 대책 연구
안보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 •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분석 •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 경찰외근,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 대책 연구
교통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교통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교통업무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
범죄수사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수사구조 개혁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수사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사경찰제도 및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운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보안, 인사 등에 관한 사항 •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소내 서무와 다른 연구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홍보업무 • 연구계획 수립관리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 간행물의 인쇄배포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섭외 업무

치안정책연구소 조직도

